

보도시점 2024. 4. 24.(수) 11:00
4. 25.(목) 조간

배포 2023. 4. 24.(수) 09:00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 '23.10.24. 공포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4.4.25.)
- 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농약 안전성 재평가 의무화
-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농약의 위해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둘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하였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요약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총자과	책임자	과 장	문태섭 (044-201-1891)
		담당자	사무관	곽재은 (044-201-1895)



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 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

- 농약의 품목등록 취소 등을 위한 안전성평가 심의절차 규정(시행령 제8조의2)
 - * 농약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의 품목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심의절차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농약 안전성평가 심의절차임을 명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농관원장에게 위임(시행령 제21조의4 및 제22조)

□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에 관한 제도개선

- 수출입 식물검역에 사용하는 농약등은 제조·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제한해 왔으나,
 -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은 제조·수입업자가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해당 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시행령 제20조)
- 제조·수입업자가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판매업자의 의무사항 추가(시행규칙 별표 3의8, 3의9)
 - *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경우에는 판매 이력관리를 위해 판매업자도 제조·수입업자와 똑같이 농약의 모집단별 판매정보 등을 기록·보존 및 제공하도록 의무화